

의안번호	2217817
의 퇴 인	장철민 의원
회 답 일	2026.7.24.
추 계 번호	26C1829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의2 (인건비 등 지원)	○ 국가는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약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제1항) 1.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의무규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약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4조의2(인건비 등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 제2조제2호다목¹⁾에 해당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인건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해당 혁신형 제약기업 중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약기업을 현시점에 알 수 없어, 해당 기업의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인건비 등의 규모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 중 11개 바이오 벤처사²⁾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산재보험료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혁신형 제약기업(바이오 벤처사) 산재보험료 현황: 2023~2025년

구분	2023	2024	2025
상시근로자수(명)	1,411	1,412	1,090
보수총액(백만원)	88,758	108,602	151,564
산재보험료부과액(백만원)	597	682	926

주 1. 사업장에서 보수총액 신고 시 상시근로자 수를 함께 신고하지만, 보수총액 미신고 시 공단 직권조사로 보수총액만 확인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누락될 수 있음

2.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2) 비씨월드제약,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제넥신, 코아스탬캠온, 테고사이언스, 헬릭스미스, 올릭스, 지아이이노베이션, 큐리언트, 큐로셀(2026년 5월 기준)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소임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소임	02-6788-4742	soimlee@assembly.go.kr